

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 공시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제1호에 따라, 지배구조내부규범 변경 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■ 개정 사유

이사회 의장의 임기 관련 조항의 문구를 아래 표와 같이 변경하였음.

	지배구조 내부규범
변경 전	제4조(이사회 의장) ① 이사회는 매년 이사회 결의로 사외이사 중에서 이사회 의장을 선임하며 그 임기는 익년도 정기주주총회까지로 한다.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.
변경 후	2.1.2. 이사회 의장 ① 이사회는 매년 사외이사 중에서 1인의 이사를 이사회 의장(이하 “이사회 의장”)으로 선임한다. 이사회 의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. 단, 이사회 의장의 임기가 임기 중의 최종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 전 만료될 경우에는 그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시까지 임기를 연장한다. 이사회 의장의 유고 등으로 새로 선임된 이사회 의장의 임기도 이와 동일하다.